

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물건(예: 각종 회원권 과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위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것이다.

이중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권형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기준을 권고한 기타물건의 종류는 7종으로서 그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상조정(5) : 차량(0.64%), 기계장비(0.02%), 선박(0.95%), 항공기(1.47%), 건축물(건축물, 2.93%)
- 인하조정(1) : 건축물(건축물)중 저유조(지하암거) : 별도보고
- 동결조정(2) : 특수부대설비(시설물), 입목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도에 일임한 기타물건의 종류는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지하자원 6종이다.

### ① 차량 및 기계장비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7인승이상 10승이하 승합자동차 과표를 승용자동차 과표로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2004년부터 이들 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즉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와의 차이인 경과년수와 내용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승용자동차로 과표를 산정,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생산·수입차량 및 기계장비는 시가를 조사하고 그 입증가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였으며 생산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생산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하였다.

생산중단된 차량 및 기계장비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거래상황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동결하였으며 수입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수입면장상 가격과 수입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한 후 이를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